



제1698호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5 2 0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1 5 3 1 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체 육 진 흥 과 4
- 공 고 제 1 5 3 5 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3차) 도 시 재 생 과 14
- 공 고 제 1 5 3 6 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4차) 도 시 재 생 과 19
- 공 고 제 1 5 3 7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평 생 교 육 과 23
- 공 고 제 1 5 3 8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평 생 교 육 과 30
- 공 고 제 1 5 3 9 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37
- 공 고 제 1 5 4 0 호 「남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47
- 공 고 제 1 5 4 2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57
- 공 고 제 1 5 4 6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도 시 경 관 과 61

고 시

- 고 시 제 8 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79
- 고 시 제 8 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동 소로3-268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 시 재 생 과 82
- 고 시 제 8 6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2개소)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 시 재 생 과 86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청 제2022-1520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8.12. ~ 2022.8.27.

3. 공 고 대 상 : 77러 7754 외 5대

4. 공고내용

-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 일자	보관장 소	연락처	비고
1	2022-00122	77러7754	봉고 III 코치	도림동 584-52 이면도로	엄*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2*번길 12-2*(부개동)	2022.6.15.~ 2022.6.30. 2022.7.6.~2 022.7.21.	주소불명 보관기간경 과후반송	2022. 6.9.	(주)인천 폐차사 업소	032-814 -7077	
2	2022-00124	20모8125	아반떼 (AVAN TE)	만수동961-3 2 인도 위	박*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8*번길 24-1*, 10*동 20*호(주안동, 청도스카이뷰)	2022.6.15.~ 2022.6.30. 2022.7.6.~2 022.7.21.	기타 보관기간경 과후반송	2022. 6.9.	(주)인천 폐차사 업소	032-814 -7077	
3	2022-00129	93로6483	봉고 III 플러스 내장차	장자북로11- 21 장수감리교회 앞 코너 커브길	최*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5, 10*동 30*호(청학동, 용담마을아파트)	2022.6.24.~ 2022.7.11. 2022.7.15.~ 2022.7.31.	경비원배달 폐문부재	2022. 6.9.	(주)한신 폐차	032-590 -6940	
4	2022-00131	14더2737	아반떼 (AVAN TE)	간석로72번길 한양빌라 앞 이면도로	김*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71-*, B동 40*호(간석동, 청양빌라)	2022.6.29.~ 2022.7.14. 2022.7.15.~ 2022.7.31.	보관기간경 과후 반송 보관기간경 과후반송	2022. 6.21.	(주)인천 폐차사 업소	032-814 -7077	
5	2022-00132	인천남동 타2519	이룬차	장승남로38 골드주얼리 앞 인도	김*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 50*동 80*호(장항동, 호수마을)	2022.6.29.~ 2022.7.14. 2022.7.15.~ 2022.7.31.	보관기간경 과후 반송 보관기간경 과후반송	2022. 6.20.	(주)인천 폐차사 업소	032-814 -7077	
6	2022-00135	97조2184	포터 II	간석동176-1 0 썸모텔 앞 이면도로	박*현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20*번길 20, 10*동 50*호(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	2022.6.29.~ 2022.7.14. 2022.7.15.~ 2022.7.31.	본인 폐문부재	2022. 6.21.	(주)한신 폐차	032-590 -694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531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08.11.시행)에 따라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문화

2. 주요내용

- 자구수정(안 제10조)
- 남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통제장치 마련(안 제11조)
- 각종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마련(안 제12조~안 제13조)
-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22조)

- 지방보조금 관리 및 행정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명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준용 규정 마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 연 락 처 : 전화 032-453-2154, FAX 032-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08.11.시행)에 따라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문화

☐ 주요내용

- 자구수정(안 제10조)
- 남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통제장치 마련(안 제11조)
- 각종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마련(안 제12조~안 제13조)
-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22조)
- 지방보조금 관리 및 행정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명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준용 규정 마련(안 제23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체육회 설립비용 및”을 “다음 각 호의”로, “등을”을 “등 보조금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2조,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회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생략) ② (생략)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 설립비용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1조(재정지원) ① ----- ----- 다음 각 호의 ----- ----- 등 보조금을 -----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

<신 설>

<신 설>

다.

제1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회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

제12조 ~ 제19조 (생략)

<신설>

<신설>

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 제21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자료 1]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535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54호(2011. 7. 1.)로 사업시행인가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1 일원
3. 사업 시행자: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8. 18. ~ 2022. 9. 2.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8392)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23, 403호 ☎032-421-463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제5회수용재결신청사업열람공고대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5	19,243,500	19,243,500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2)421-4631, fax(032)461-4025 차장김병규010-6588-8062

사업시행자 조서(영업권)

Page 1
/ 3

[별지 제1목록]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22수용0069)

수 용 영 업 권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10	간석동	451-5 1층	(주)비움 이전비보상	1식	(주)비움(대 표 김*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01번길 18 1층(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101번길181층(간석동)		
11	"	"	철재선반 L:2m. H:3m	4개	"	"		
12	"	"	사무집기	1식	"	"		
13	"	"	인테리어	1식	"	"		
14	"	"	기타집기비품	1식	"	"		
					소계(5)건			
1	간석동	445-6	(주)태광이앤씨 이전비보상	1식	(주)태광이 앤씨(대표 김*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01번길 42 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101번길42간석동		
2	"	"	창고 사각파이프 썸라이트지붕(목재바닥) (9*3)	1식	"	"		

3	"	"	자재적치대 사각파이프(4*1.5)	1식	"	"		
4	"	"	사무집기	1식	"	"		
5	"	"	에어컨 벽걸이	1식	"	"		
6	"	"	간판 목재 및 각파이프(2.5*2.5)	1식	"	"		
7	"	"	대문 알루미늄 자바라(5*1.2)	1식	"	"		
8	"	"	인테리어	1식	"	"		
9	"	"	기타집기비품	1식	"	"		
					소계(9)건			
15	간석동	451-5 2층	한국에코 이전비보상	1식	윤*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01번길 18 2층(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101번길182층(간석동)		
16	"	"	사무집기	1식	"	"		

제1698호

남동구 구보

2022. 8. 18. 목요일

17	"	"	에어컨 스탠드	1식	"	"		
18	"	"	선반 L:3m, H:2m	1식	"	"		
19	"	"	기타집기비품	1식	"	"		
					소계(5)건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9건			3인		0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536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54호(2011. 7. 1.)로 사업시행인가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1 일원
3. 사업 시행자: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8. 18. ~ 2022. 9. 2.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8392)
7. 열람서류: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23, 403호 ☎032-421-463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제5회수용재결신청사업열람공고대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	1	8.73	6,532,540					6,532,540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2)421-4631, fax(032)461-4025 차장김병규010-6588-8062

사업시행자 조서(토 지)

[별지 제1목록]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22수용0076)

Page 1 / 1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 부	실 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9-17	도	도	45.9㎡ x62/326	유*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36 (등)인천광역시남동구이화로36		
						- 이하여백 -		

토 지 합 계	1필지			8.729	1인		0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1537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2022. 10월중 구립도서관인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구민 독서문화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명칭 및 위치 추가 :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만수동),
남동구청 평생학습관(3층)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전화 453-6431 / FAX 453-589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2. 10월중 구립도서관인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주민 독서문화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추가 : 별표 1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도서관법」 제27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대표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611번길 15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분관	소래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분관	서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근린공원 내)	
분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3층)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내
분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2층)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간석4동 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 19번길 7(1층)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만수5동 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 28번길 3(3층)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내

[참고자료]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1538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2022.10월중 구립도서관인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정기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도서관인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금요일로 지정하여 소래도서관을 포함한 4개 구립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도서관 이용을 가능하게 함 : 안 제5조제1항제1호
- 구립도서관인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추가 :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6.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만수동),
남동구청 평생학습관(3층)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전화 453-6431 / FAX 453-589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대비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2. 10월중 구립도서관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정기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립도서관인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금요일로 지정하여 소래도서관을 포함한 4개 구립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게 함 : 안 제5조제1항제1호
- 「간석4동 작은도서관」과 「만수5동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추가 : 별표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9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남동논현도서관”을 “남동논현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자 유 열 람 실	08:00 ~ 22:00
		종 합 자 료 실	09: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멀티미디어실	09:00 ~ 18:00
분관	소래도서관	자 유 열 람 실	06: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종 합 자 료 실	09:00 ~ 22: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분관	서창도서관	자 유 열 람 실	06: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종 합 자 료 실	09:00 ~ 22: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분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분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작은도서관	간석4동 작은도서관	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작은도서관	만수5동 작은도서관	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현행	개정안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월요일(다만, <u>남동논현도서관</u> 은 <u>금요일로</u> 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5조(휴관일) ① ----- -----. 1. ----- <u>남동논현도서관, 작은도서관</u>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539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통·반장 선발에 있어 연령 제한을 낮춤으로써 청년 참여 확대 및 통장 구성 연령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통장의 2회 연임 임기만료 1개월 전 사직 후 다시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재위촉 될 경우, 사실상 통장 임기가 무제한이 되는 문제점을 방지

2. 주요내용

- 통장 위촉 연령조건을 25세에서 18세로 수정 (안 제5조제2항제1호)
- 2회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재위촉을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 (안 제5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34,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통장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통한 통장 조직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통반장의 위·해촉
 - 연령조건 수정 (25세 이상 → 18세 이상)
 - 2회 연임 통장의 제한적 재위촉 사유(근거) 마련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중 “제2항 제1호”를 “제2항제4호 후단”로 한다.

4.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의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장이 위촉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한다.	② ----- -----. ----- -----.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u>25세</u>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u>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u>	1. ----- ----- ----- <u>18세</u> ----- ----- -----.
2.·3. (생략) <u><신설></u>	<u><단서 삭제></u>
	2.·3. (현행과 같음)
	4. <u>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의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u>

4. (생 략)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통·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10. (생 략)

④ ~ ⑦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 -----

-----.

1. -----
----- . ----- 제2항 제4호 후단-----
-----.

2.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舉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舉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3.30)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05. 12. 30,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일부개정 2015. 3. 5.) (일부개정 2018.3.30)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안에 거주 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일부개정 2014. 8. 5)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 명칭변경 및 동의 통·반 조정시 동일인의 통장 재위촉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3. 5., 2019. 6. 28.)

4. 반장의 재위촉 시 통장은 반장의 그간 활동사항을 토대로 재위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장은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540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기존 통장의 2회 연임 임기만료 1개월 전 사직 후 다시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재위촉 될 경우, 사실상 통장 임기가 무제한이 되는 문제점을 방지

2. 주요내용

- 2회 연임 임기만료 통장의 공개모집 지원 조건 삭제 (안 제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34,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통장의 연임 및 공개모집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통한 통장 조직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공개모집
 - 2회 연임 임기만료 통장의 공개모집 지원 조건 삭제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6항 및 제7조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00 동 00 통장 지원서**1. 일반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	주택)		핸드폰)		
직업			학력		
현주소지 거주기간	년 월 (. . ~ . .)				

2. 주요경력 활동(수상)경력

근무(활동)기관	직위(직책)	근무(활동)기간	근무(활동)내용

※ 단체활동 경력등을 포함 기재하되 허위 기재시 통장 위축이 취소 될 수 있음 (증빙서류 첨부)

3. 지원동기

--

4. 통장 지원에 따른 숙지 사항**☞ 통장 해촉 기준**

1. 해당 통·반 관할구역외로 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에 대한 진정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2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6. 각종 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9. 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0.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통장의 역할 및 임무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의견수렴
2.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
3. 자율적인 주민 자치조직으로의 반사회 운영 활성화
4. 사건·사고 우려지역 통보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원
8.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위의 통장 해촉 기준 및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숙지하고 통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자 (서명)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동 00통장 선발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주요활동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며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00 동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통장 선발 심사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통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 불가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지원자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개모집 등) ① ~ ③ (생략)	제3조(공개모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2회 연임 임기만료 예정인 통장이 공개모집에 다시 지원하 고자 할 경우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 다.	<삭 제>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⑥ 공개모집을 위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8. 8.) (개정 2019. 6. 28.)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의견수렴
2.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
3. 자율적인 주민 자치조직으로의 반사회 운영 활성화
4. 사건·사고 우려지역 통보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4. 8. 5)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신설 2018.3.30)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원 (신설 2018.3.30)
8.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4. 8. 5) (일부개정 2018.3.30.)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공개모집 등) ① 2회연임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촉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하며, 통장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④ 2회 연임 임기만료 예정인 통장이 공개모집에 다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⑤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청 제2022-1542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8.17. ~ 2022.9.1.
3. 공고대상 : 이륜차 6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 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수취 인명	주소	발송 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18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2022.7.29.	(주)인천폐차 사업소	
2	2022-0018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2022.7.29.	(주)인천폐차 사업소	
3	2022-0018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2동 188-5 삼성탑스빌 사유지	2022.7.29.	(주)인천폐차 사업소	
4	2022-0018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 휴먼시아3단지 305동 앞 자전거 거치대	2022.8.4.	(주)인천폐차 사업소	
5	2022-0018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3단지 311동 지하주차장 아래층 계단	2022.8.4.	(주)인천폐차 사업소	
6	2022-0019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용천로153번길	2022.8.10.	(주)인천폐차 사업소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18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9. ○ 견인일 : 2022.7.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2022-0018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9 ○ 견인일 : 2022.7.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2022-0018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9 ○ 견인일 : 2022.7.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2동 188-5 삼성탑스빌 사유지
	2022-001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4. ○ 견인일 : 2022.8.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 휴먼시아3단지 305동 앞 자전거 거치대
	2022-0018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4. ○ 견인일 : 2022.8.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3단지 311동 지하주차장 아래층 계단

관 리 편 이	2022-0019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14. ○ 견인일 : 2022.8.1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용천로153번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22-1546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월 1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광고물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1.12.14.)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의 전단 신고 수리 후 민원인이 모든 전단에 신고증명서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 개선
 - 조례 제3조제2항 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10] 개정
 - 기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 부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09. 08.(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 연 락 처 : ☎ 453-2282, FAX 453-28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전단’의 신고 표시 방법 개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2021.12.14.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의 전단 신고 수리 후 민원인이 모든 전단에 신고증명서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 개선(조례 제33조제2항 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 조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10] 변경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별표8)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3조(별표10)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다.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개당 14만원	개당 18만원	개당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개당 49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개당 80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105만원+ 10만원을 더 한 금액	개당 135만원+ 13만원을 더 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장당 14만원	장당 18만원	장당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장당 80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5천원
라) 30장 초과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0장 초과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67 -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제3조제2항 관련)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까지 00장 배포
남 동 구 청 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 ※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생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u>.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이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나) 면적 10㎡ 초과		이하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3) 벽보		이하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4) 전단		이하	이하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참고자료]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 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5㎡ 초과 0.8㎡ 이하		22만원	
- 0.8㎡ 초과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3㎡ 초과 1.6㎡ 이하		50만원	
- 1.6㎡ 초과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3㎡ 초과 2.6㎡ 이하		100만원	
- 2.6㎡ 초과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 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5㎡ 초과 0.8㎡ 이하		12만원	
- 0.8㎡ 초과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 초과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1일째부터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3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91일째부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 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3.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8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24 (간석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8 (운연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24(간석동)	2009.7.6.	예전 주안면과 다소면에는 돌과 우물이 많았다는 유래에서 제명	2022.8.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 524 기초구간에위치하여524를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8 (운연동)	2022.8.1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동 소로3-268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동 소로3-26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453-2982, 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08. 18.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5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도림동 소3-268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B=7.9m, L=49m, A=61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용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도림동	562-3	학	6,730	90		공유지	인천광역시				
2	도림동	558-4	전	145	145		공유지	인천광역시				
3	도림동	558-14	도	84	16		공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4	도림동	557-1	전	1,140	62	1/2	조00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00 아파트A동000호(논현동)	남동00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00(만수동)	근저 당권	
						1/2	이00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00 아파트A동000호(논현동)				
5	도림동	558-9	도	51	51		공유지	인천광역시				
6	도림동	553-6	도	866	246		공유지	인천광역시				
계				9,016	610							

한전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위치(NO)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도림동	553-6	STA. 0+54.37	R	8818R294남촌간71H1	한전	
2	도림동	553-6	STA. 0+59.79	R	8818R293남촌간71	한전	

체신주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도림동	553-6	STA. 0+54.37	R	8818R294	LGU+	
2	도림동	553-6	STA. 0+59.79	R		LGU+	

기타 지장물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도림동	553-6	STA.0+50.00	R	가로등	인천시	
2	도림동	553-6	STA.0+59.79	R	신호등	경찰청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2개소)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2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교통행정과 ☎453-2682, 도시재생과 ☎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08. 18.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7-6 외 1
- 위치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6-3 외 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규모

- 만수동 56-3번지 일원: A=336.4㎡(주차대수: 10대)
- 만수동 67-6번지 일원: A=332.9㎡(주차대수: 11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별첨1]

용지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56-3	대	168.2	168.2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 **				56-3번지일원 주차장
2	56-8	대	168.2	168.2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 **				56-3번지일원 주차장
3	67-6	대	166.4	166.4	성** 외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 **				67-6번지일원 주차장
4	67-7	대	166.5	166.5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				67-6번지일원 주차장
계				669.3						

[별첨2]

지장물조서

지 장 물 조 서 (1)

지장물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소	
1	만수동	56-3	슬라브	가옥 지1	연와조 슬라브	89.21 m²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	56-3번지일원 주차장
			슬라브	가옥 1F	연와조 슬라브	86.49 m²			
			슬라브	가옥 2F	연와조 슬라브	76.32 m²			
			기와	대문	B=1.8m, H=2.2m	1 개소			
				대문	B=1.0m, H=2.2m	1 개소			
			조적	담장	H=1.9m, T=0.2m	L = 14.5 m			
				수목	흉고 10cm, H=3.5m	2 주			
				정화조		1 개소			
				계량기 보호통	900X500	1 개소			
2	만수동	56-8	슬라브	가옥 지1	연와조 슬라브	93.00 m²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 *	56-3번지일원 주차장
			슬라브	가옥 1F	연와조 슬라브	90.30 m²			
			슬라브	가옥 2F	연와조 슬라브	85.59 m²			
			슬라브	가옥 3F	연와조 슬라브	70.185 m²			
				대문	B=1.9m, H=2.0m	1 개소			
			옹벽+조적	담장	옹벽 H=1.65m, T=0.30m 조적 H=1.35m, T=0.15m	L = 12.0 m			
				정 화 조		1 개소			
				계량기 보호통	900X500	1 개소			

지 장 물 조 서 (2)

지장물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소	
3	만수동	67-6	슬라브	가옥 지1	연와조 슬라브	16.20 m²	성** 외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 *	67-6번지일원 주차장
			슬라브	가옥 1F	연와조 슬라브	51.30 m²			
			슬라브	가옥 1F	연와조 슬라브	43.20 m²			
			슬라브	가옥 2F	연와조 슬라브	86.49 m²			
			슬라브	창고	시멘트블럭조 슬라브	2.64 m²			
			기와	대문	B=1.4m, H=2.1m	1 개소			
			조적	담장	H=1.4m, T=0.15m	L = 12.0 m			
				정화조		1 개소			
				계량기 보호통	900X500	1 개소			
4	만수동	67-7	슬라브	가옥 지1	연와조 슬라브	19.305 m²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	67-6번지일원 주차장
			슬라브	가옥 1F	연와조 슬라브	94.50 m²			
			슬라브	가옥 2F	연와조 슬라브	91.53 m²			
			슬라브	창고	시멘트블럭조 슬라브	2.64 m²			
			기와	대문	B=1.8m, H=2.2m	1 개소			
			조적	담장	H=1.8m, T=0.15m	L = 12.0 m			
			조적	담장	H=1.4m, T=0.15m	L = 13.0 m			
			조적	담장	H=1.2m, T=0.15m	L = 12.0 m			
				정화조		1 개소			
				계량기 보호통	900X500	1 개소			